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6. 21.

운영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2년 6월 8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2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2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시행)으로 의무 설치된 윤리 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2조의 2)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2조의 3)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된 일부개정규칙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72조의 2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함. 또한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중도 사퇴·품위손상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함.
- 안 제72조의 3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자문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비밀 유지 등의 사항을 신설함.

○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그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들을 신설, 정비한 것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9
----------	-----

발의년월일: 2022년 6월

발의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22.1.13.시행)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72조의 2)
-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72조의 3)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입법예고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단서 중 “출석위원”을 “출석의원”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자구의 바로 고침과 이의의 결정)”을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전자 임시 회의록”을 “전자임시회의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바로 고침”을 각각 “정정”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단서 중 “정한한”을 “정당한”으로 한다.

제72조의2의 제목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제72조의2제3항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장기여행·중도 사퇴·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7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위원이나 위원”을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위원”을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의3을 제72조의4로 하고, 제7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⑤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2조의4(중전의 제72조의3)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회의의 비공개) ① 지방의 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u>출석위원</u>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39조(회의의 비공개) ① ----- ----- . ----- ----- <u>출석위원</u>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5조(<u>자구의 바로 고침과 이의의 결정</u>) ① 발언한 의원 및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는 <u>전자임시 회의록</u>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u>바로 고침</u>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p> <p>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u>바로 고침</u>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p>	<p>제45조(<u>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u>) ① ----- ----- <u>전자임시회의록</u>----- ----- ----- <u>정정</u>----- ----- . ----- ----- .</p> <p>② ----- ----- <u>정정</u>----- ----- ----- .</p>
<p>제70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생략)</p>	<p>제70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p>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9조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

② -----  
-----.  
----- 정당한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  
-----  
-----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자문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  
-----





<신 설>

<신 설>

⑤ 자문위원이 꺾워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자문위원회의의 의사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2조의3(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72조의4(의견수렴) -----  
-----  
----- 자문위원회 -----  
-----  
-----.